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 안 설 명 자 : 내무과장 이 수 철
- 나. 개 정 사 유
 -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
- 다. 주요내용
 - 목적을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1조)
 - 선발은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를 "일정한 기준에"로 개정(안 제4조 제1항)
 -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개정(안 제7조 제1항)
 -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일부조항의 현실에 맞게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7. 첨 부 :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69
----------	-------

제출년월일 : 1997. 5. 28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목적을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1조)
- 선발은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를 "일정한 기준에"로 개정(안 제4조 제1항)
-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개정(안 제7조 제1항)
-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안 제9조)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를 "일정한 기준에"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개시후 1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장에서 해임될때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 (선발) ① <u>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4조 (선발) ① - - - - - - - - - - - - <u>일정한 기준</u> -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u>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 - - - - - - - - - <u>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u>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생략)</p> <p>1. (생략)</p> <p>2. <u>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u></p> <p>3~5 (생략)</p>	<p>제8조 (지급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이장에서 해임된 때</u></p> <p>3. (현행과 같음)</p>
<p>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u>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u></p>	<p>(삭제)</p>

현행	개정
<p>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p>	<p>(삭제)</p>